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612
------------	------

2017년 2월 23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 1. 제안경위

- 2017. 2. 6 서울특별시상 제출 (2017. 2. 8 회부)

## 2. 제안이유

- 가. 2016.7.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 나.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등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디지털광고물을 적용하는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지주 이용 간판 및 전자게시대,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정하고,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경우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로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안전점검 대상을 강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벽면 이용 간판에 디지털광고물 설치·표시 근거 마련(안 제4조제3항 신설)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 1층 출입구 벽면에 건물 또는 건물을 사용하는 자를 안내하는 내용을 정지화면(한 화면의 지속시간은 최소 9초 이상,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시간은 최대 1초 이내) 표시
- 나. 지주 이용 간판에 디지털광고물 및 전자게시대 설치·표시 근거 마련(안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3항 신설)
- 상업지역 및 관광특구에 표시면적 1제곱미터 이하, 높이는 2미터 이하로 정지화면으로 표시
  - 공공목적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위하여 상업지역·지하철역·공항·버스터미널 등의 광장 또는 전통시장 주변에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200미터 이상으로 표시(표시면적 12제곱미터 이내에서 정지화면으로 표시)

다.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로 변경(안 제22조)

라.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확대(안 제24조)

- 디지털광고물을 설치·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지주 이용 간판
- 디지털광고물을 설치·표시하는 공연간판 및 전자게시대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원안 동의
-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해당 없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 없음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
-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 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국·국 협의 사항: 해당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붙임

마. 입법예고 (2016.12.22. ~ 2017.1.11.) 결과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한국옥외광고미디어협회	○ 제2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제2항제1호 “영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타사광고”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타사광고” 로 개정	○ 반영 - 영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타사광고” 정의를 인용하는 것으로 “나목”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타사광고만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
한국옥외광고미디어협회, 한국전광방송협회	○ 제2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제3항제1호나목의 “제3조제1항제4호”를 삭제	○ 반영 - 개정안 제3조제3항제1호는 자사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안 제3조제1항제4호 타사광고를 삭제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한국전광방송협회, 한국옥외광고미디어협회	○ 제3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제1항제4호가목의 세로크기는 15미터 이하를 삭제	○ 반영 - 세로크기의 이중 규제로 15미터 이하를 삭제 반영
서초구	○ 제9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제3항제3호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를 삭제	○ 미반영 -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광고물이 표출될 경우에 시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미반영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시민소통 담당관	○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보도상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 또는 구두수선대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로 지정	○ 반영 -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보도상 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 또는 구두수선대를 편익시설물로 지정하여 시정홍보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한국전광방 송협회	제23조(심의위원회의 기능)제1항에 “자유표시구역의 운영기본계획에 따라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 기능에 포함	○ 반영 - 시민의 생활환경 침해 및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자유표시구역 안에 표시되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 기능에 포함

## 5. 검토의견

### □ 개정 조례안의 제출배경

- 이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2016.7.7.)됨에 따라 조례 명칭을 상위법령의 변경된 명칭에 맞게 개정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디지털광고물의 적용 및 표시방법을 정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안전점검 대상을 강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서울특별시장의 제출하여 2017년 2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법”과 “령”이라 함) 개정의 주요 특징은 옥외광고산업의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명 변경 및 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통한 광고산업 진흥, 디지털광고물의 적용·표시대상 광고물의 종류 규정,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 퇴폐 및 유해광고물 처벌 강화, 전자계시대의 설치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였다는 점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 개정취지

- 옥외광고산업 지원강화 위한 법률명 변경 및 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통한 광고산업 진흥,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 퇴폐 및 유해광고물 처벌 강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 ○ 개정 주요내용

- 법률 명칭 변경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디지털광고물의 표시·설치 근거 마련
- 옥외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제도 도입
-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
- 시·도지사의 위법한 광고물등에 대한 합동점검 신설 등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 주요내용

- 디지털광고물 정의 규정
-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의 범위를 정함(벽면 이용 간판,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등)
-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전자게시대)의 설치 근거 마련
- 옥외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및 지정취소 신설
-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 마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옥외광고물 등 합동점검 절차 규정 등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안) 주요내용

- 조례 명칭 변경
- 디지털광고물 사용하는 벽면 이용 간판(건물의 입주자 정보 제공 등)을 간판 총 수량에서 제외
- 자사광고에 디지털광고물 사용 확대(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지주 이용 간판<전자게시대 포함>, 창문 이용 광고물) 및 빛의 밝기 및 색깔 제한에 디지털광고물 추가, 구청장의 빛의 밝기 제한 절차 강화
- 자사광고 옥상간판에 디지털광고물 사용제한
-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지주 이용 간판,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방법 마련
- 동근 벽면 등에 설치되는 간판을 위해 돌출 폭 확대(규제완화)
-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추가(가로판매대 또는 구두수선대)
- 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심의기능 확대(자유표시구역의 운영기본계획에 따라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포함)
- 디지털광고물의 안전점검대상 강화
- 자유표시구역 안에서 시장이 허가한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위반에 대한 조치, 이행강제금, 허가취소 등은 권한 위임에서 제외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

- 이번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서울시 실정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조례 명칭 변경

- 상위법령의 명칭 변경에 따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

나.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적용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의 설치·표시방법

-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sup>1)</sup> 중 조례로 위임한 옥외광고물의 설치와 표시방법 등을 정하고, 시장이 디지털광고물등을 제한하는 광고물의 범위와 빛의 밝기 및 색깔 제한에 디지털광고물을 포함하였음.

1)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은 1)벽면 이용 간판, 2)공연간판, 3)옥상간판, 4)지주 이용 간판, 5)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6)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7)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8)창문 이용 광고물 등 총 8가지임(영 제3조의2). 이 중 옥상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조례로 위임하지 않음.

○ 벽면 이용 간판 (안 제4조제3항 신설)

- 벽면 이용 간판<sup>2)</sup> 중 전광류광고물<sup>3)</sup>이나 디지털광고물<sup>4)</sup>은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 벽면에 설치하는 간판”<sup>5)</sup>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출입구 벽면에 설치하는 경우 표시방법으로는 그 건물 또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자를 안내하는 내용을 표시하고, 표시면적은 2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을 제한하고, 정지화면<sup>6)</sup>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음.

○ 공연간판 (안 제7조제4호)

- 공연간판에 전광류광고물과 디지털광고물의 표시를 자사광고<sup>7)</sup>에 한하여 허용하고, 이를 설치할 경우에 벽면이용 간판과 같게 돌출 폭을 180센티미터 이하로 함.

○ 지주 이용 간판<sup>8)</sup> (안 제9조제1항제4호 신설)

- 상업지역과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 지주 이용 간판에 전광류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표시는 자사광고에 한하며, 그 표시면적은 1제곱미터 이하, 높이는 2미터 이하로 하여 정지화면으로 표시하도록 함. 이 경우 벽면 이용 간판과 중복 설치를 금지하여 거리 간판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하였음.

○ 전자게시대 (안 제9조제3항 신설)

- 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현수막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전자게시대<sup>9)</sup>가 신설됨에 따라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관리규정을 신설하였음.
- 전자게시대의 설치장소는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이상 법

---

2) “벽면 이용 간판”이란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을 말함(영 제3조제1호가목). 건물 등의 벽면에 부착하는 옥외광고물의 모양·형태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종전에는 ‘가로형 간판’ 또는 ‘세로형 간판’으로 분류하던 옥외광고물이 ‘벽면 이용 간판’으로 일원화되었음.

3) “전광류광고물”이란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의 발광(發光) 장치를 이용한 것] 광고물 중 광고내용의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광고물을 말함(영 제4조제1항제12호가목).

4) “디지털광고물”이란 디지털 디스플레이(전기·전자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평면 혹은 입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장치)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광고물을 말함(영 제2조제2항).

5) 하나의 간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 면적은 225제곱미터 이하, 가로크기는 당해 건축의 폭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됨(조례안 제4조제1항제4호).

6) “정지화면”이란 화면의 지속시간이 최소 9초 이상,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시간이 최대 1초 이내인 것을 말함(시·도 조례 표준안 제10조제3항제3호).

7) “자사광고”란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하며, “타사광고”란 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영 제10조제1항제2호, 제4조제1항제1호나목)

8) “지주 이용 간판”이란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등을 말함(영 제3조제6호).

9) “전자게시대”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을 이용하는 광고물을 말함(영 제16조제5항).

시행령 규정)와 시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 하고, 설치방법으로 전자게시대 간 수평 거리를 200미터 이상<sup>10)</sup>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정지화면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음.

- 참고로, 서울시 산하 25개 자치구중 4개 자치구에서 총 16기의 전자게시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문자 또는 화면변환 기능외에 일부 동영상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붙임] 참조).

#### ○ 창문 이용 광고물(안 제17조제2항)

- 점멸 또는 동영상 광고물을 자사광고 또는 직접 판매하는 상품 광고를 건물의 1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상업지역에만 허용함. 크기는 유리벽·창문 등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최대 1제곱미터 이하로 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벽면 이용 간판 : 연면적 5천㎡ 이상 건물의 1층으로 표시를 제한하고, 면적은 2㎡ 이하로 자사광고만 표시</li><li>- 지주 이용 간판 : 상업지역, 관광특구에 면적은 1㎡ 이하로 자사광고만 표시</li><li>- 전자게시대 : 상업·공업지역, 관광특구, 철도역·지하철역·버스터미널 등 광장, 전통시장에 설치,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 200미터 이상</li><li>- 창문이용 광고물 : 상업지역, 건물 1층 이하에 표시, 면적은 1㎡ 이하, 자사광고 또는 판매하는 상품 광고만 표시</li></ul> |
|--|

#### 다. 공공시설물 추가로 시정홍보 광고물 표시근거 마련(안 제10조제1항제1호)

- 보도상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 또는 구두수선대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 시설물로 추가하여 시정홍보를 가능하도록 함.

#### 라. 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심의 기능 확대(안 제22조)

-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로 변경하고, 시민의 생활환경 침해 및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자유표시구역 안에 표시되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포함함.

#### 마.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확대·강화(안 제24조)

-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을 디지털광고물을 적용하는 벽면 이용 간판, 지주 이용 간판,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적용하는 공연간판, 전자게시대로 확대하고, 안전점검 기준을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 검토사항

#### 가. 디지털광고물의 표시방법(안 제4조제3항 관련)

- 디지털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조례로 위임한 광고물 중 벽면 이용 간판과 지주 이용 간판의 경우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을 금지하고, 정지화면으로 표시하도록 한 바, 이는 빛 공해로 인한 생활환경 침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10)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미터 이상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조례안 제9조제3항제2호).

- 그러나, “디지털광고물”이란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광고물을 의미하고,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가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광고매체 활성화 및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일괄적 규제보다는 특정지역(예: 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관광특구 등)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빛의 점멸이나 동영상 허용하되,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하여 옥외광고산업의 진흥과 빛공해 방지라는 두 가지 목적을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사료됨.

※ 공연간판 : 동영상(자사광고) 허용, 창문이용 광고물: 동영상(1층, 자사광고, 상업지역) 허용

#### 나. 전자계시대의 설치장소 및 방법 (안 제9조제3항 관련)

- 지주 이용 간판 중 전자계시대의 설치장소는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개정 조례안에서는 지하철역·공항·버스터미널 등의 광장 또는 전통시장 주변,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으로 하고 있음.
- 이 중에서 설치장소를 “시장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하는 것은 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장소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으나, 특히 공공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설치장소를 정함으로써 현수막을 대체 흡수하도록 한 전자계시대의 도입취지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또한 전자계시대의 설치방법으로 계시대 간 수평거리를 200미터 이상을 유지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미터 이상<sup>11)</sup>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일률적 규제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완화적용보다는 용도지역별, 광고물 표시자유구역 등에 따라 수평거리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사료됨.

#### 다.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추가 (안 제10조제1항제1호 관련)

-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보도상영업시설물”<sup>12)</sup>인 가로판매대와

11) 「시·도 조례 표준안」(행정자치부)에서는 100미터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12) “보도상영업시설물”이란 [별표1]의 규격에 따라 설치된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를 말함.

“가로판매대”란 신문, 잡지, 음료, 과자 등의 판매 및 교통카드의 충전과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보도에 설치된 시설물을, “구두수선대”란 구두를 수선하거나 닦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보도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함.

[별표 1]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종류 및 규격

종 류	규 격(m) (가로×세로×높이)	점용면적(m <sup>2</sup> )	비 고
가로판매대	2.65×1.5×2.5내외	2.4 ~ 4.0내외	
구두수선대	2.8×1.5×2.0내외	2.4 ~ 4.2내외	

구두수선대를 추가하였음.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시행령에서 정한 공공시설물과 시·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구청장이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 표시가 가능함. 서울시 시민소통담당관과 법률지원담당관에서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를 편익시설물로 볼 수 있다는 자문결과에 따라 시정홍보를 위한 광고를 하기 위해 공공시설물에 “보도상영업시설물”을 추가한 것으로 현재에도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임. “보도상영업시설물”은 서울시 소유로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수익하고 있어 상업광고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시정홍보에 한하는 것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라. 디지털광고물의 표시방법 관련

- 디지털광고물의 적용·표시대상 중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공공시설 이용 광고물의 경우 각 개별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디지털광고물의 표시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선부서에서 디지털광고물 허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허가여부를 둘러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자치부에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 사료됨.



[붙임] 서울시 자치구별 전자게시대 설치 현황

구 별	설 치 현 황						
	위 치	신호기 거 리	지 면 높 이	차량방향 직 각	동영상 여 부	화면변 환정도	표 시 색 깔
중 구 (‘10.5.) 6기	광희동 터리(녹지대)	30m	8m	×	문자변환 (일부 동영상)	15초	풀칼라
	장충체육관 앞(보도)	20m	8m	×	"	"	"
	세종호텔 앞(녹지대)	20m	8m	○	"	"	"
	을지로 입구(교통섬)	20m	8m	×	"	"	"
	서 울 역(교통섬)	20m	8m	○	"	"	"
	회현동 3호 터널 입구(보도)	20m	8m	×	"	"	"
광진구 (‘11.9.)  (‘12.7.)	2호선 건대전철역 사거리 (롯데백화점 앞)	20m	5m	×	문자변환 (일부 동영상)	15초	풀칼라
	2호선 강변역(보도)	20m	5m	×	"	"	"
	5호선 군자역(보도)	15m	9.6m	×	"	"	"
노원구 (‘09.2.) 1기	하계역 사거리(보도)	5m	12m	×	화면변환 (일부 동영상)	8초	풀칼라
서초구 (‘07.8.) 6기	강남병원사거리 (교통섬)	50m	10m	×	화면변환 (일부 동영상)	10초	풀칼라
	방배역(보도)	30m	7m	×	"	8초	"
	교대역 보도)	26m	10m	×	"	6초	"
	양재역(녹지 )	30m	10m	×	"	8초	"
	강남역(녹지대)	30m	6m	×	"	"	"
	신사역(보도)	2m	10m	×	"	"	"

(서울시 도시빛정책과 내부자료)